

# 丁卯·丙子胡亂期の 捕虜 送還 研究

姜 性 文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1. 序 論
2. 後金·淸에 의한 捕虜 送還
3. 朝鮮에 의한 捕虜 送還
4. 捕虜 送還의 影響
5. 結 論

## 1. 序 論

정묘·병자호란으로 호칭되는 朝淸戰爭은 전쟁 자체의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전사자수나 물적 피해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전후처리상에 있어서 조선이 치른 그 대가와 영향은 심대하였다. 역대의 다른 전쟁과 달리 전후처리가 국가의 주요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稱臣事大로 표현되는 양국간의 외교문제이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로는 수십만 명에 달했던 포로 문제였다.

조선은 전쟁 중에도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던 것이 포로 송환 문제였

다. 그리고 이는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들까지도 연관된 문제였기에 범국가적 차원의 과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적 과제를 당대의 정부와 사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 문제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도 있어서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연구는 포로 송환 문제를 주로 贖還 貿易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이해이거나 혹은 특정 문제에 관련된 이해의 수준이었다.<sup>1)</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로 송환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포로 송환 자체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로 송환의 주 대상자가 조선인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이해를 위해서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로 시행되어진 포로 송환문제로 이를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포로 송환의 결과로 인해 조선 사회에게 미친 문제는 무엇이였을까 하는 점이다. 나아가 이 시기의 포로 송환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에 관한 정리를 통해서 포로 송환에 대한 보편적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後金·淸에 의한 捕虜 送還

### (1) 丁卯胡亂期

1627년 1월 13일에 후금군의 조선 침공으로 발발한 정묘호란은 동년 3월 3일 丁卯和約인 江都誓約으로 일단 종결되었다. 이 정묘화약의 내용은 첫

1) 朴容玉, 「丁卯亂 朝鮮被擄人刷贖還考」, 『사학연구』 18, 1964. 朴容玉, 「丙子亂被擄人贖還考」, 『史叢』 9, 1964. 박용옥씨는 포로 송환 문제를 贖還 貿易에다 중점을 둔 이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청무역의 발전과 신문화수입이라는 역사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평가를 시인하고 있다. 속환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는 森岡康의 논문(『贖還被擄婦人の離異問題について』, 『朝鮮學報』 26집, 1963)을 참고할 것.

째로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둘째로 후금은 화약이 성립되는 즉시 군사를 철퇴한다. 셋째로 양국은 서로 封疆을 지켜 압록강을 넘지 않는다. 넷째로 조선은 후금과의 강화 후에도 명나라와 단교하지 않는다. 다섯째로 양국은 매년 춘추 2차에 걸쳐 사절을 교환하고, 조선 領內의 會寧城과 義州·九連城 사이 압록강 가운데의 蘭子島에 開市하여 무역을 한다.<sup>2)</sup>

조선과 후금간의 휴전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금은 청천강 이북의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후금군은 椴島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의 毛文龍軍을 막는다는 구실로 약 4,000여 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켰다. 그들은 전승국이라는 우월한 입장을 내세워 조선에게 ‘漢人 망명자의 송환’ 등을 강요하면서 6개월간이나 체류하였다.

조선은 강도서약이 조인되기 이전부터 후금국의 劉海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서 군사가 귀환하는 날 우리 지경에 머물지 말고 士女들을 노략치 말 것과 동행중인 조선의 將官과 금번에 사로잡힌 관민 및 將卒을 모두 일일이 송환해 줄 것을 왕자에게 당부했던 것이다.<sup>3)</sup> 종전과 더불어 포로 송환 문제는 양국간의 전후처리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어 조선은 후금국 두 왕자에게 다음과 같은 揭帖을 보내면서 포로 송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실로 측은히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귀국의 군사가 우리나라를 깊숙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남녀 백성들이 사로잡혔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제각기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잡혀서 이역의 땅에서 떠돌다 죽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어진 사람으로서의 차마 못할 일입니다. 귀국은 땅도 넓고 병사도 넉넉하니 사소한 포로들이 별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2) 『仁祖實錄』卷15, 仁祖 5년 2월 庚申條 참고.

3)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신유조.

돌려보내 주신다면 의로운 명성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어진 마음이 사물에  
까지 미치어 하늘이 필시 굽어보실 것입니다.<sup>4)</sup>

라 하면서 조선은 후금국에게 포로 송환을 강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포  
로 송환을 내세우고 있는 명분으로는 宣傳官을 통한 국서 상에서 조선측은  
和約으로 인해 양국이 一家가 되었음을 명분으로 포로 송환을 요망하였  
다.<sup>5)</sup> 이에 대한 성과는 즉각적이어서 후금국은 다음 달인 동년 4월에 定  
州·宣川·郭山·鐵山 읍민 32,100여 명을 송환하여 주었다. 송환은 계속되  
어 嘉山 등의 포로 2만여 명도 송환하여 주었다.<sup>6)</sup> 이처럼 후금군이 被拉한  
인원수는 주격전지에서는 1개 군읍에서 8천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수  
였다.

주격전지가 아닌 후방 지역에 속하고 있는 평양 부근에서는 6개 군읍에  
서의 포로 수는 4,986인에 달하였다. 2차 격전지에서는 1개 군읍의 포로가  
8백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었다.<sup>7)</sup> 이와 같은 포로 수치는 조선에 침입한 후

4)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경오조.

5)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병자조.

6)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갑진조와 갑인조 참조. 『大東野乘』 권31, 「續雜錄」 2, 정묘년 4월 10일조에는 후금국 호송관이 조선인 포로 12,000명을 송환해 주었다.

7)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5월 신사조. 金起宗의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郡 縣	被擄人	被殺人	逃還人	기 타
平壤	2,193	158	344	掩骼 1,169
江東	225	(34)	67	
三登	1,500	28	111	
順安	576	44	78	
肅川	370	60	33	
咸從	121	(17)	(34)	
合 計	4,986	290(341)	623(657)	1,169

平壤 등 6읍의 피해자는 포로(피로인) 4,986명, 피살인 290명, 도망자(도환자) 623명이  
다. 강동과 함종의 피살인과 도환자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것은 해당자가 전무한 사실보  
다는 당시의 미확인을 의미한다. 미확인에 대한 추정치 계산은 전체 평균치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본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첫째로  
6개 군읍에 불과한 제한된 자료와 둘째로 각 지역마다의 피해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금군이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피랍작전을 전개한 증거로 보여진다. 또한 포로 숫자가 피살인 수의 20배나 달하고 있는 기록은 후금군의 조선인 피랍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증거라 하겠다.<sup>8)</sup>

후금측이 조선측의 포로 송환을 순순히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후금국이 이들 조선인 포로를 즉각적으로 송환해 준 사실은 후일 포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포로에 대한 조치가 정식적인 포로 송환의 성격이 아닌 일시적인 억류인에 대한 호혜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후금군으로는 포로의 본국 이송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금국이 조선인 포로 송환의 명분상 목적을 국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후금측의 국서에 대한 조선측의 답에서

포로를 돌려보내 준 것에서 맹약을 실천하는 호의를 알 수 있으니 매우 훌륭하다. 지난날 두 나라가 맹약할 때 이미 각각 국경을 지킨다는 말로써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고 하늘에 맹서하였다. 그런데 지금 보내온 글을 보니, 군대를 머물게 할 것인데 군량을 보조하라는 등의 말이 있다. 이는 하늘에 고하여 맹서하고 전쟁을 끝내어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뜻이 아닌 듯하니 귀국이 필시 그러하지 않을 줄로 안다.<sup>9)</sup>

러므로 평균치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성향에 의한 추정치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강동의 피살인 추정치는 전체 피살인에 대한 전체 도환자의 비율인 1/2로 추정해서 34명으로 추산된다. 함종의 피해는 가장 적었고 이에 근접한 강동의 1/2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함종의 피살인은 17명으로, 도환자는 34명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를 통해 1개 군읍의 평균 포로수는 800명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평양은 타 지역과는 달리 그 피해가 컸음을 피살인과는 별도로 掩骼으로 표현된 희생자이다. 엄격은 흔히 장기간의 遺棄로 인해 발생된 肉脫된 屍身을 말한다. 이는 전투의 치열함과 더불어 후금군이 의복을 탈취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소각시킨 결과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피살인과는 별도 파악한 것으로 추론된다.

8)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5월 신사조. 金起宗의 보고문에는 6읍의 被擄人 4,986인, 被殺人 290인, 逃還人 623인으로 집계하였다. 原被擄人(被擄人+逃還人)은 5,609인(4,986+623)으로 피살인의 20배나 되었고, 도환인은 원피로인의 1/10의 수준인 것을 참고할 수 있다.

KCS I

---

9)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갑진조.

조선측의 답서 내용을 통해서 포로 송환 대가로 후금측은 병력 주둔의 양해와 군량의 조달이라는 즉 ‘留兵助糧’의 목적이었다. 당시 후금은 명나라의 경제적 봉쇄로 인해 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 포로의 식량을 담당하기에 벅찼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포로의 송환 대가로 식량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조선은 송환된 포로인을 원거주지보다는 안전한 内地로 이주시켰다. 원거주지는 명군인 毛文龍軍의 주둔지인 椴島와 인접해서 이들에 의한 피해가 염려되었던 것이다. 당시 毛兵에 의한 인접 지역의 피해가 심했던 것이다. 金起宗의 보고에 의하면 모병에 의한 定州 군민의 피해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병에 보내는 양곡으로 1결에 2두씩을 거두어서, 모병에 보내는 쌀이 국가 경비의 3분의 1이나 되어 국가 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sup>10)</sup>

송환인의 내지 이주는 변방지의 空虛라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들 신병상의 안전을 위해 内地로 이주시킨 것이다. 자활 능력이 없었던 이들 송환민에 대한 구제책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sup>11)</sup>

후금측은 궁핍한 물자의 조달을 위해 포로 송환을 중개로 하여 조선과의 開市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측은 포로 送還價인 贖價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였다.<sup>12)</sup> 양국간의 和盟이 성립된 5개월 후인 인조 5년 8월에 후금측이 이를 먼저 제기하게 되었으며,<sup>13)</sup> 이어 9월에도 개시를 재차 요구하였던 것이다.

10)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을묘조.

11)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신해조와 갑인조의 김기종의 馳啓 참조.

12) 당시 포로 송환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인 送還價는 贖還價인데 이를 줄여서 贖價·還價라 불렀고, 지불된 화폐의 일반적 기준이 은화였기에 贖銀價나 혹은 줄여서 銀價라 하였다. 이 속가를 지불하고 포로를 송환할 경우에 이를 贖還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속가를 지불하고 回郷한 부녀자는 贖還女라 호칭하였다. 속환은 有補償을 통한 송환의 의미이기에 광의로는 송환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현대적 용어인 포로·도망자·송환·송환가 등을 사용함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확실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는 원 용어인 逃人·속환·속환가·속환녀 등도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의미 전달이 번잡스러운 被擄人·贖去 등의 용어는 피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측의 답서 초안은 연변지역의 인민이 재화가 없어서 개시한다 할지라도 개시가 제대로 이를 것 같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장의 개시를 거절하려 하였다. 그러나 延平府院君 李貴는 개시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속환가의 협상을 제기함으로써 후금에 의한 후환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인조도 개시 불가피성을 은연중 인정하면서도 개시로 인한 명조와의 대외관계를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개시는 성립되지 못하였다. 조선은 후금의 군사적 위력으로 인해 굴복은 당하였지만 명나라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관계를 일시에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이러한 입장이 곧 개시 거절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겠다.<sup>14)</sup>

인조는 무력에 의한 후금과의 화친은 부득이했지만 명조와 교전하고 있는 후금에게 군량 조달을 위한 개시 교역은 대의명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시 교역이 명나라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전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후금측의 속환 개시의 독촉으로 인해 조선측의 衆論도 개시로 방향이 설정되었다. 인조 5년 10월 義州府尹 嚴愷의 보고를 계기로 備局에서는 속환자로 입주케 하여 그 부모 처자를 속환케 하였다.<sup>15)</sup> 이어 毛將에게도 속환의 불가피성을 보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양지시켜서 속환 개시를 결정하였다.

양국간의 개시 일자는 후금측이 일방적으로 인조 5년 11월 1일로 정해서 통보해 온 것은 동년 10월 28일자 의주부윤 엄황의 보고문이었다. 그러나 속환 개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포로 본가에 대한 통첩과 물자의 운반 등의 준비로 인해 시간이 필요했다. 후금측은 인조 6년 2월 1일 안을, 조선측은 3월 안을 제안해서 결국 2월 21일로 최종 결정되었다.<sup>16)</sup>

조선은 개시에서 오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명나라에게 전해질 것을 염려

13)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8월 정미조.

14) 朴容玉, 『丁卯亂. 朝鮮被擄人刷贖還考』, 『사학연구』 18, 1964, p. 365.

15)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10월 신유조.

16)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정월 병자조.



해 개시의 목적이 포로 속환 개시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측에서는 3천 석 發米의 뜻은 오로지 조선 포로를 속환해 오기 위한 외의 다른 뜻이 없음을 개진하였다.<sup>17)</sup>

개시 장소 문제는 개시문제와 더불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였다. 조선측은 古例의 전통에 의거 처음부터 변방인 義州 지역만을 고려하였다. 후금 측에서는 의주 개시 대신에 京城 개시안도 제안되기도 하였다. 양국간은 개시 장소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 없이 의주로 결정하였다.

포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한 개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환가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조선측은 1천 석의 속환가로 포로 1~2백 명의 속환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후금측은 甲軍에게 분급한 포로를 다시 換奪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조 6년 정월 6일에 비국에서 朴蘭英이 가지고 온 6백 여인의 「被擄人成冊」에 의해 포로 본가에 통보는 했지만 속환가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다.

조정이 주도한 속환에 앞서 개인적으로 속환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박난영이 회담관으로 심양에 유숙 중에 매일 포로들의 모여서 號哭하는 정황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귀환 중에 인삼 1근으로 2인을 속환했으며, 일행에게도 각 1인씩을 속환토록 해서 22인에 이르렀다.

포로 1인에 대한 공적인 속환가는 靑布 65필로 약정해서 70여 인을 속환하였다. 양국간의 제1차 속환 개시의 결과는 부진하였다. 200명중에서 불과 3분의 1의 성과만 있었다. 30여 명은 곧 속환하기로 합의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으로 도로 데리고 갔다.<sup>18)</sup>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속환가가 예상외로 높은데 있었다. 속환가는 개시 논의 초에는 靑布 10필로 예상했던 것이 실제로는 65필로 6배 이상이나 오른 가격으로 흥정된 것이었다. 심지어 1인의 속가가 천여 량까지 치솟게 되자 성사되지 못한 채 罷市되고 말았다.<sup>19)</sup>

17)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정월 경오조.

18)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4월 갑오조.

金汗은 속환이 70인에 불과한 것이 속환을 빌미로 해서 逃走之計를 유인한 것이라고 크게 노하여 힐책하기도 하였다.<sup>20)</sup> 조선측에서는 속가가 1천량으로 폭등해서 이를 지불할 수 없었던데 있었다고 변명하였다. 공식적인 속환 개시는 계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속환은 심양 사행을 따라가 행하는 비공식적인 경로가 주였다. 인조 6년 8월 27일에 회담관으로 심양에 간 박난영 등에 의해서 남녀 92인의 속환이 허락되었다.<sup>21)</sup>

포로 중에서 친족이 존재하고 또한 속가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속환 개시나 혹은 비공식적인 사행 동반을 통해서 속환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연고 포로이거나 속가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들의 號哭하는 참상은 극에 달했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도 미속환자에 대한 속환 대책을 세워야 했다.

## (2) 丙子胡亂期

정묘호란을 통해서 청군은 조선군의 전투 능력을 과소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인 포로에 대하여 장차의 군사적 위협세력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다. 청군이 조선인 포로 획득의 목표를 명나라 정벌군을 위한 병력 조달의 일환으로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정벌군의 동원을 위해서는 청군은 별도의 최정예의 조선군의 징발을 丁丑約條에 의해 정식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청군은 정묘호란의 전후 처리를 통해서 조선인 포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군은 조선과의 전투에서 실제의 전투보다는 조선인 포로 획득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군은 조선의 저항

19) 『대동야승』 권31, 「속잡록」 2, 무진년 6월 6일조 “一人之價 牛十首·馬十首·紬緞·青布·木棉·水銀·豹皮·紙束之欲 幾至千兩之數言之”.

20) 『대동야승』 권31, 「속잡록」 2, 무진년 6월 6일조의 胡差 朴景龍 보고문.

21)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9월 갑인조.

능력이 없는 비전투원 특히도 부녀자의 포로 획득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인신 매매법을 연상시키는 행위였다. 이러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은 청군의 장기간 주둔지였던 남한산성 주변 일대로 용인·이천·양주 등을 포함한 경기 지역이었다. 청군의 목표는 빈궁한 백성보다는 거액의 속가를 받을 수 있는 양반 사대부 집안에 그 목표를 두었던 것이었다. 청군에 의한 조선인 포로 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당시의 사적에서 포로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편린들을 통해서 잠정적인 추산을 할 수밖에 없다. 羅萬甲의 『丙子錄』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피력하고 있다.<sup>22)</sup> 또한 『인조실록』 상의 기록을 감안해서 추산해 보아도 그 수는 10만 명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sup>23)</sup> 당시 전후 처리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명길의 對明 報告文이 실려있는 『遲川集』과 『續雜錄』 기록에 의하면 청군이 조선의 항복을 받고 정축년 2월 15일 한강을 도하할 때의 조선인 포로의 수가 무려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4)</sup>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중국에 대한 보고문이기애 조선의 피해 참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조선 포로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짐작케 한다.

22) 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日錄』, 정축년 2월 초2일조에는 “적진 가운데 적에게 포로가 된 이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표현은 조선 포로 수가 청군 수(128,000명)와 비견된 수로 여겨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5만 명으로 추론된다. 이어 동년 2월 초8일조에는 “後日 瀋陽之人 市人口六十萬 而被虜於蒙古者 不在此數 其多知也” 구체적인 포로의 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선인 포로의 수가 심다함을 당시 심양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된 사실에서 이를 예시하고 있다.

23) 포로 숫자에 대한 추산으로 주 7)을 참고한다면 주격전지의 1개 군읍 8천명과 2차 격전지의 8백명을 산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정묘호란시의 주 접적 군현이 10여 개(8만 명)에 2차 접적지 30여 개(24,000명)로 전체 포로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병자호란시의 주 접적 군현은 10여 개(8만 명)에 2차 접적 군현은 70여 개(56,000명)로 전체 포로수는 약 14만여 명에 달하였다.

24) 『遲川集』 권17, 제7책2 『移陳都督咨』와 『대동야승』 권34, 『속잡록』 4, 무인년 7월 16일조에 명나라 陳(麟)都督에게 보낸 인조대왕의 咨文 내용이다. 또한 청군은 침입시보다 철군시에 약탈의 화가 극심하였다.

청군의 포로 목표는 사대부 가문이었지만 실제로 획득한 포로의 대부분은 빈궁한 백성들로 속가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은 없었다. 빈궁한 백성이라 하여 조선 정부는 이들 포로를 그대로 무관심 방치만 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들의 송환문제가 곧바로 전후처리의 사회적 안정과 직결되는 최대의 당면과제였다. 이를 위한 군사 외교의 첫 단계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도성으로의 還都 직후인 2월 13일에 도승지 李景奭이 공식적으로 서민들의 송환 문제를 제기하였다.<sup>25)</sup> 이에 앞서 비공식적으로는 송환과 더불어 송환가 문제가 청군 진영에 의해서 먼저 발의되었던 것이다. 2월 초순경에 청군이 慕華館에 주둔 중에 조선인 포로 송환가로 남자는 백금, 즉 은 5냥, 여자는 백금 3냥으로 공언한 바 있었다.<sup>26)</sup>

조선 정부가 전후처리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江華島에서 被拉된 왕족을 포함한 대신들 가족의 송환 업무였다. 청국은 조선의 수차에 걸친 외교적 교섭을 통해 昭顯世子와 鳳林大君 등을 포함한 인질을 제외한 1,600여 명의 강화도 포로에 대해서는 송환가의 조건 없이 송환해 주었다.<sup>27)</sup> 그 후에도 청 황제는 특례적인 조치로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無補償으로 송환해 주곤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본격적인 송환문제의 거론은 청군이 국경선 밖으로 철군 전인 2월 하순경부터였으며,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청군측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연시켰다.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는 포로 송환은 청군이 조선에서의 철병을 완료한 후에 시행한다. 둘째는 송환은 심양에서 행한다. 셋째는 중도에서의 송환은 일체 금한다.<sup>28)</sup>

청군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제시는 정상적인 외교 절차에 의한

25)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계미조.

26) 『대동야승』 권33, 「속잡록」 4, 정축년 2월 2일조.

27)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정축조.

28) 『瀋陽狀啓』 정축년 4월 12, 13일조 참조.

송환을 통하여 고가의 송환가를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송환에 대한 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10년으로 한정했던 것이다.<sup>29)</sup> 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청국민으로 귀속된다는 결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송환의 시효는 丁丑年(인조 15:1637년 5월 17일 심양에서 속환 개시)부터 丙戌年(인조 24:1646)까지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昭顯世子는 만기 2년 전에 해당하는 인조 22년에 귀국 명령을 받고 동년 11월 26일에 燕京을 출발해서 동왕 23년(1645) 정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다.<sup>30)</sup> 청국은 조선 세자의 귀국 선물로 세공과 폐물의 액수를 거의 절반으로 감해주는 환심을 베풀어주었다.<sup>31)</sup> 이어서 鳳林大君은 인조 23년 3월 25일에 귀국 환송연을 받고,<sup>32)</sup> 동년 5월에 서울에 입경하였다. 세자와 봉림대군의 한국 이후로는 더 이상의 속환은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도 속환 업무에 관해서 이를 주관했던 소현세자의 한국으로 속환 업무는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이와 같이 포로 송환의 주 업무로 전개된 10년간의 송환 업무의 기간은 대일본과의 전후 40여 년간 지속된 것과 비교해 보면 단기간이었다.<sup>33)</sup> 이처럼 청국이 대조선 송환 업무를 단기간에 종결지으려는 의도는 청국의 대전략이 대조선전에서 對明作戰으로의 전환에 목적을 둔 선결적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청국의 소극적 송환정책으로 인해 송환 인원수에 있어서도 전체

29) 『심양장계』 정축년 8월 19일조.

30) 인조 22년 5월에 攝政 睿親王은 燕京에 입성하였고, 동년 10월에 청은 심양에서 연경으로 천도하였다. 청의 入關 성취로 인해 조선과의 전후처리가 급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31) 『인조실록』 권46(전), 인조 23년 2월 신미조에 의한 세폐물의 감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포 400필·소목 200근·차 1천포는 면제되고, 각색 명주 2천 필은 1천 필로 감액되고, 각색 목면 1만 필은 5천 필로, 포 1,400필은 700필로, 粗布 7천 필은 2천 필로, 順刀 20구는 10구로 감액되었다. 세자는 귀국 3개월 후인 4월 26일에 34세의 일기로 요절하였다.

32) 『인조실록』 권46(전), 인조 23년 4월 신미조.

33) 『인조실록』 권44, 인조21년 2월 갑진조 참조. 1643년에도 통신사 尹順之가 14명의 조선인 포로를 대동하고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포로의 1/10이하로 추산된다.<sup>34)</sup>

병자호란 후에 청국은 전일 후금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속환을 위한 開市가 진행되면서 요구하는 값은 매우 비싸고 조선인이 가진 것은 매우 적어서 실제적으로 속환이 성립되지 못하였다.<sup>35)</sup> 또한 일부는 사행과 동행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송환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상거래에 목적을 둔 통상 활동으로 인해 양국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sup>36)</sup>

양국간의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포로 송환에 대한 기준 속환가는 일반 백성의 경우에 종전 제시한 가격의 5~10배나 증가된 1인당 은 25~30냥이 되었다.<sup>37)</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된 실제 속환가는 이보다 높아서 1인당은 100~250냥 선에 이르렀던 것이다.<sup>38)</sup>

34) 병자호란기는 포로 송환의 일반적인 수치로 추정한다. 정묘호란기는 후금이 포로 이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절반 이상의 포로를 전후처리 시행 즉시 송환하였다. 이는 후금이 조선인 포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된다. 임진란의 포로수는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으로 추산하면 약 6~8만 명이고, 『광해군일기』 권 114, 광해군 9년 4월 계속조. 兼司僕 鄭信道の 상소문에 薩摩 1개 주의 포로수가 30,700여 명으로 전체로 추산하면 10만 명 이상이다. 공식적인 송환 인원수는 7,500여 명으로 전체 포로수의 1/10에 불과한 실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

35) 『심양장계』 정축년 6월 21일조에 6월 16일의 개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36)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경진조의 우의정 申景禎의 상소문.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8월 갑오조에는 조선인이 몰래 南靈草를 심양에 들여보냈다가 청국에 의해 발각되어 이를 크게 힐책하였다. 담배는 광해군 8년(1616)에 유입되어 1621년이래 대유행하였고, 심양인들도 매우 좋아하자 조선인은 송환가로 담배를 이용하게 되었다. 청국은 토산물이 아니고 재물을 소모시킨다고 하여 흡연을 엄금하였다.

37) 『심양장계』 기묘년 4월 20일조에 의하면 사내 아이 1명의 속환가가 60냥이었으며, 박로가 지난 가을에 도주하여 압송된 인원(무인년 8월 18일조에 의하면 조선인 12명)을 속환하기 위하여 300냥을 가지고 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속가는 1인당 25냥에 해당된다. 동일 일자의 기록에는 관노 德玉의 은가가 42냥이었다.

38) 『심양장계』 무인년 4월 21일조에 의하면 청국에 지불하기로 약속해서 보낸 銀자가 5천 5백 냥이며, 거주지와 성명을 적어서 보낸 남녀의 인원수가 모두 50명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산술적인 평균을 하게되면 1인 당 110냥이 된다. 『심양장계』 기묘년 정월 8일조에 의하면 趙讓의 장모 속가가 130냥이었다. 『심양장계』 경진년(인조 18년) 5월 22일 승정원개탁에 의하면 용골대와 鄭命守가 조선 여인 1인씩을 데리고 있었는데 정명수가 환가로 300냥을 받았으며, 용골대에게는 그 이상의 환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

양국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효력을 상실한데는 개인적인 사적 외교가 횡행되면서부터였다. 일부 부유층 사대부 가문에서는 자신들 가족의 조속한 송환만을 목적으로 삼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길을 통해서 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사신 왕래의 인편을 통해서 비밀히 청군측과 교섭함으로써 그 속가는 날로 폭등하였다.

辛成會의 아들 1명의 속가가 6백 냥에 이르렀다.<sup>39)</sup> 영의정 金瑬는 첩의 딸 속환을 위해 龍骨大에게 1천 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속환가가 턱없이 많이 된 것이었다.<sup>40)</sup> 영중추부사 李聖求가 지불한 송환가는 1,500냥에 달하였다. 이러한 고가의 贖銀價는 조정에서 큰 물의가 되었던 것이다.<sup>41)</sup> 속은가에 있어서 이성구가 문제가 된 것은 속가 자체에 있어서 파격적인 대가는 물론하고 악질적인 통역관인 鄭命壽에게 비공식적인 뇌물을 제공한데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sup>42)</sup> 이로 인해 이성구는 관직 파직

다. 동일자에 의하면 일부 미납금에 대한 이자로 1백 냥에 대하여 달마다 20냥씩 더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진년 6월 20일조에 의하면 용골대의 西行의 경비 마련을 위해 말 1필과 公贖人 1구를 팔기를 바라자, 마지못해 말 가격으로 60냥과 공속인 1구의 대가로 110냥을 주기로 했는데, 7월 3일의 지불 시에는 甫大平古의 공속인은 1백 냥, 龍將의 공속인은 2백 냥이었다. 공속인의 주인이 용골대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속가가 일반인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불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심양장계』 기묘년 4월 20조.

40) 『병자록』, 『急報以後日錄』 2월 3일조.

41) 『인조실록』 권36, 인조 17년 5월 기사(13일)조의 상소문에 “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정을 견디지 못하여 자식을 위한 속환으로 贖銀價가 무려 1천 5백 냥이나 되었습니다. 신이 가산을 탕진한 나머지 맨손에 대책이 없어서 비루하고……. 『속잡록』 4, 무인년 5월조에 의하면 ”이성구가 심양에서 돌아왔다. 당초에 강화도에서 패전할 때에 성구의 부인 권씨는 사절하고 아들 하나가 잡혀갔는데, 이 때에 심양에서 보고 값을 주고서 속하기를 요구하였다. 그 주인이 백금 1천 5백 냥을 달라고 하는데 5백 냥을 주니 허락하므로 데리고 왔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성구의 아들 하나 찾아오는 값을 이렇게 많이 주었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속하여 돌아오는 데에 해로운 것이라’ 하였다. 당시에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인조실록』의 내용이 사실로 여겨진다.

42) 『병자록』, 『雜記亂後事』, 鄭命壽(守)가 이성구에게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똥구멍에서 나온 소리보다도 못합니다”라고 했지만, 성구는 이것을 조금도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아들이 오래지 않아 심양에 인질로 갈 것이니 잘 돌보아 주시오” 하였다. 이성

과 도성 밖으로 방출되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청군과의 공식적인 포로 송환은 성립되지 못하면서, 청군은 고가의 속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원래 조선 정부는 일반 백성의 속가는 국고 부담 원칙을 제시한 바 있었지만, 속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대했던 것이다. 당대 조선 정부는 전란 직후로 재정이 궁핍한 처지였기에 이의 부담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결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는 가족 속가의 준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가정이 속출하기도 하였다.<sup>43)</sup> 개인적으로 지불되는 속가와 매년 지불되는 공적인 歲幣의 부담은 조선 사회의 경제적 형편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sup>44)</sup>

구는 당시 영의정의 신분으로 오직 아들의 송환만을 목적으로 1천 냥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까지 그 수모를 참았던 것이다.

- 43) 속환은 처음 國庫 지원의 '公贖'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부 국고 보조의 '半私半公贖'이 되었지만 결국은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私贖'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 사속가의 마련을 위해 대부분은 노비나 田宅 등 가재를 파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備邊司謄錄』 인조 16년, 무인 4월 28일조). 또한 속가 부족분을 대출해서 이를 상환하지 못한 폐단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기도 하였다(『심양장계』 기묘년 정월 초8일조).
- 44) 이 속환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심양장계』 경진년 8월 8일자의 임경업의 장계에 의하면 은자 1냥에 무명이 2필씩으로 계산하고 있다. 『通文館志』 권9, 인조 18년 경진조에 의하면 황금 50냥이 은 1천 냥으로 대체하고 있다. 당시 속가로 일반 서민의 경우는 25냥, 특별 지명인 경우는 100~250냥 기준이다. 전체 속환 인원수를 1/10에 해당하는 5만 명으로 상정하고, 이 중에서 1/10인 5천 명을 특정인으로 추정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1~2백만 냥에 달하였다(박용옥, 『병자호란포로속환고』, p. 93에서는 5백만 냥으로 추산). 이는 당시 조선의 경제로는 큰 부담이 되었다. 결국 청국은 이 사적인 속환금 수입 외에 매년 조선의 공적인 조공품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 3. 朝鮮에 의한 捕虜 送還

#### (1) 丁卯胡亂期

贖還 開市와 더불어 조선·후금 양국간에 난문제로 등장한 것이 조선인 포로 도망자에 대한 후금측의 송환 요구인 逃人 刷還 요구였다.<sup>45)</sup> 후금측의 도망자 송환 요구에 대해서 조선측은 和好關係의 위배를 이유로 초기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후금측은 사신들을 계속하여 보내면서 도망자 송환을 강권하였다. 후금측은 인조 6년 2월 이전부터 도망자 송환을 독촉해 왔다. 그러자 조선측에서는 도래하는 중도에서 굶고 얼어죽어 생환자의 수가 백에 1~2인도 못된다고 하여 동정을 구하면서 刷送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후금측의 도망자 송환은 더욱 강경해졌다.

당시 양국간의 5가지 불편사는 중국을 돕고(助天朝), 도망한 사람을 쇄송하고(刷送人), 모문통과 접촉하고(接毛將), 성지를 수축하고(修城池), 회령의 개시를 허락하지 않는 것(不許會寧開市)이었다.<sup>46)</sup> 이 중에서 가장 큰

45) 刷還과 刷送은 송환의 범주에 속한 용어로 쇄환은 상대국에서 자국민을 자국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이고, 쇄송은 이와는 반대로 자국에서 상대국민을 상대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후금 양국은 이 용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逃人(逃還人)이 조선인 포로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후금측은 조선측에게 도인 쇄송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은 후금측이 자국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데 있었던 것이다. 후금은 자국민의 범주를 여진족과 여기에 후금 지배하의 漢族을 비롯한 여러 종족들에다가 나아가 조선인 포로는 물론하고 심지어 전쟁이전의 조선 귀환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금은 도망자를 포함한 자국민을 推刷 혹은 刷出해서 본국(후금)으로 入送(실제로는 執送·縛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후금이 조선에게 요청한 도망자 송환의 대상이 단순히 조선인 포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의의 자국민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과까지도 포함해서 포로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다.

46)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5월 병술조. 영의정 申欽의 上言.

난제는 도망자 쇄송 문제였다. 다른 네 가지 문제는 거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던 때였다. 후금측이 보내 온 국서 상에는 도망자의 수가 1,031인이며, 그중 성명을 열거한 자는 5인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송환을 요구하였다.<sup>47)</sup> 이에 대하여 인조는 직접적인 도망자 속가보다는 예물 등을 통한 외교적 관계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sup>48)</sup> 인조 6년 6월 21일 胡差 朴仲男 등이 도망자 송환을 이유로 입경하자, 조정은 이를 후인 6월 23일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金瑬는 “비록 다 쇄송하지 않더라도 7~8인을 쇄송해 보내면 금나라 한의 노여움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의하자, 인조는

5~6인을 쇄송해 보내어 충돌의 화를 면할 수 있다면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으나 의리로 말하면 온 나라가 병화를 입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쇄송해 보낼 수 없다.<sup>49)</sup>

라 하면서 刷送 不可論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비록 국왕이 쇄송 불가론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신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쇄송 불가피론이었기에 일단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3일 후인 6월 26일 쇄송에 대한 회의가 재론되었지만 다수의 의견들은 약간 명을 쇄송함이 兵禍를 緩和시키는 계책으로 여겼다. 그러나 인조는 병화를 입을지라도 쇄송 불가라는 대원칙을 고집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張維·李貴·吳允謙 등 일부의 대신들은 약간 명의 쇄송을 통한 「緩禍之一計」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지만 인조의 불가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중에 7월 5일에 행부제학 鄭經世이 양국의 화친을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李灋을 참할 것과<sup>50)</sup> 병조판서 李廷龜도 상서하기를 약간 명을 쇄송하였다가 秋市에서 속환할 것을 청한

47) 『承政院日記』 仁祖 6년 5월 26일 병술조.

48)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5월 병술조.

49)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6월 임자조.

50)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7월 갑자조.

것을 계기로,<sup>51)</sup> 드디어 국왕도 이를 가납해서 조정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결국 이정구의 안대로 도망자 쇄송 문제가 7월 7일에 최종 결정을 보았다. 인조의 도망자 쇄송 불가론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나 이를 현실적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방책이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후금의 송환 요구를 최소한의 선에서 수용하면서 이를 속환 문제와 연계된 선상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조선은 후금의 관심을 도망자의 송환 문제보다는 포로 속환에 관심을 쏟도록 하는 방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망자 쇄송의 최종 결정을 보게된 당일에 회답사 李灑을 참하고,<sup>52)</sup> 2일 후인 7월 9일에는 수정된 문서를 귀환하는 호차 박중남에게 보내게 되었다. 이어 8월 27일에는 회답사 박난영·鄭文翼이 심양에 도착하여 會寧開市·李灑治罪·願贖人入來 등에 관하여 보고하자, 金汗은 크게 기뻐해서 포로 92명의 속환도 허락했던 것이다. 후금국은 국서를 보내면서 인삼 2백 근과 貂皮 40장을 답례품으로 보내주었다.<sup>53)</sup>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조선은 최초의 도망자 송환 문제를 무난히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후금측은 계속하여 도망자 송환 문제를 거론했지만, 조선은 더 이상의 도망자 쇄송에 대한 시행이 없었다.

후금측은 인조 7년 3월 9일조에 도망자 송환을 요구하는 국서를 보내 조선측의 도망자 쇄송의 불이행을 책하고 있으며,<sup>54)</sup> 동년 4월 11일조에도 반복해서 도망자 송환의 지연에 대한 조선측을 힐책하고 있었다.<sup>55)</sup> 동년 7월

51)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7월 을축조.

52) 『인조실록』 권36, 인조 17년 6월 계사조에 의하면 이란이 사형을 받은 11년 후에 그의 아들인 李尙尹이 송변하자, 이에 국왕은 영의정 최명길과 좌의정 신경전과의 의논에 따라 직첩을 복직시켜 주었다. 당초의 죄목은 후금의 도망자의 송환 요구에 대하여 조정에 돌아가 고하여 잡아 보내겠다고 가변이 대답한 것이 죽게 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란이 실수한 것은 다만 용골대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경솔히 대답한 것이지, 고의로 국가에 일을 만들어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53)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9월 갑신조.

54)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3월 을축조.

55)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4월 병신조.

16일에 崔有海가 賑恤廳의 포목으로 속환을 제의하여 신료들의 많은 동의를 받았다. 속환 업무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포목 대신에 은화로 속환을 추진한 것이었다. 진홀청 포목으로 포로 속환비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에 세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였다. 첫째, 많은 수송 병력의 후금 지역 진입으로 인한 후금 진영의 의심이다. 둘째, 후금의 속환비 증액 요구의 폐단이다. 셋째, 개인 속환비 지불시에는 조선인들의 속임수 폐단이 우려되었던 것이다.<sup>56)</sup> 이에 대하여 국왕은 답하기를

옛날 당 태종은 당군에게 포로로 잡힌 고구려 백성들의 이산된 것을 애달프게 여겨 錢과 布로써 속환시켜 준 일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 백성이 오랑캐의 소굴에 빠져 있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sup>57)</sup>

라고 하면서 국왕은 속환을 최우선책으로 여겼던 것이다. 만약에 포목으로 인한 세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錢貨로 이를 대신해서라도 가하다 하였다. 국왕은 속환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보다는 속환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어 이듬해인 인조 8년 6월 7일조의 金差 阿之好와 박중남 등이 가지온 후금측의 도망자 송환 요구에 조선측은 매번 일단은 변명으로 이 위기를 피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8)</sup> 정묘호란 終戰 3년째를 맞이하면서 실제적인 도망자의 발생 빈도도 희소하게 되자 도망자 송환 요구는 양국간의 현안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 (2) 丙子胡亂期

당시 조선에는 전란을 피해 청국으로부터 도망해 온 각양의 逃還人이 있

56) 『인조실록』 권21(후), 인조 7년 8월 을묘조.

57) 同上.

58)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6월 을묘조.

었다. 청국은 이들의 押送을 조선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들 중에는 조선인 도망인을 비롯하여 漢人과 청국인이 포함되었고 심지어는 전란 이전에 조선에 귀화한 여진인 즉 向化人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贖還價 마련에 실패한 경우에는 포로 중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탈출해서 조선 경내로 도망한 무리들도 있었다.

포로의 대량 탈출이 노골화되자 청군은 조선에게 도망 포로에 대한 압송을 요구하였다. 도망자의 수에 비해 압송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였다.<sup>59)</sup> 조선은 초기에 이들 도망 포로에 대한 온정을 베풀었지만, 청국의 강경한 요구와 나아가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의 재개로 위협하자 이에 굴복하고 말았다.

조선 정부는 청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북 변방 지역의 수령들에게 도망 포로의 색출을 명하였다. 이 색출 작업으로 조선인 도망 포로들은 압송 조치되었다. 청국이 조선에게 압송을 요구한 도망 포로의 숫자는 실제보다도 언제나 많았다. 조선측은 이러한 청국의 무리에 요구에 대한 반박 내지는 변명보다는 오히려 이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서북 변방지대의 백성들은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압송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도망자에 대한 한 예로 비국에서는 이미 이름이 밝혀진 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쇄송하여 청국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은 속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쇄송인을 다시 송환하려는 노력에 힘썼다.<sup>60)</sup>

청국은 도망인을 오래도록 송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을 힐책하였다. 비국에서는 즉시 이의 쇄송을 청하였다. 속환의 값을 도망쳐 돌아온 사람과 일시에 가지고 가면 간사한 술책으로 값을 올릴 폐단이 염려되었다. 이

59) 『심양장계』 정축년 8월 19일조에 용골대와 마부대가 이회에게 이르기를 ‘도망자는 날마다 천명을 헤아릴 정도인데 쇄송자는 7명에 불과하다’라 질책하였다. 세자에게도 이르기를 ‘수풀에 숨은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또는 적자가 와서 의탁하는 것을 부모가 차마 끊을 수 없다’라는 등의 핑계의 말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6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무인조.

에 송환의 일을 기다렸다가 편의에 따라 속전을 주고 사오는 것이 온당하다 하였다. 이에 국왕은 쇄송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였다. 붙잡아 보내는 일은 백성의 부모가 된 자로서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며, 부득이 쇄송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람을 시켜 데리고 가서 인하여 贖錢을 주고 즉시 사오도록 하였다.<sup>61)</sup> 청국의 강력한 압송 요구가 있게 되면 조선은 이를 시행하곤 하였다.<sup>62)</sup>

丁丑約條 상에는 조선으로 도망간 여진인 즉 兀良哈에 대한 송환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sup>63)</sup> 이뿐만 아니라 호란 이전에 조선에 귀화한 한인이나 여진인들까지도 강제 송환을 요구하였다.<sup>64)</sup> 포로 송환 문제가 조선과 청국 간의 당면 외교문제로 등장하자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向化人의 송환을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였다. 원래 향화인은 대부분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조선에 投託해서 編戶된 인물들이었다. 청국에서는 이들 후손들까지도 역시 향화인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 향화인은 조선인과 결혼해서 자손들을 두어 조선인에 編戶되어 법제적인 조선인이 된 인원으로 이의 송환은 조선으로서는 난제에 속한 것이었다. 향화인 중에는 이미 제2세대나 제3세대가 되어 조선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조선은 청국의 향화인 송환의 요구에 응하여 향화인 1명을 포함해서 한인 도망인 9명과 조선인 도망인 1명을 쇄송하였다.<sup>65)</sup>

61)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7월 계해조.

62) 『심양장계』 무인년 8월 18일조에 의하면 조선인 남녀 12인과 중국인 6명을 압송시켰다. 이어 경진년 12월 19일 승정원 개탁조에 의하면 12월 16일에 청국에 바칠 靑竹과 더불어 송환인 130명이 의주에 도착했으며 이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을 말하고 있다.

63)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정월 무진조, 『병자록』, 『急報以後日錄』 정축 1월 28일조.

64) 『병자록』, 『雜記亂後事』에 崇德 2년(인조 15년) 10월 26일에 청국에서 보낸 勅諭의 내용에 포함됨.

65)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입술조의 신경진 馳啓에 청 용장이 그 수의 적음을 힐책하고 있다.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기유조에 용골대가 향화인 송환 미시행에 대하여세자를 질책함.

청국은 성명과 거주지를 기록한 690명의 향화인의 송환을 요구하였던 것이다.<sup>66)</sup> 결국 조선은 청국의 요구에 일차적 반응으로 58명의 인원을 찾아 보내게 되었다.<sup>67)</sup> 조선인 도망병의 송환 요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조선 내의 향화인 송환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요구로 시행되고 있었던 속환에 대한 명분과 동질적인 명분을 들어 요구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이국인의 조선 거주에 대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국인으로 전쟁 포로나 혹은 도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쇄송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인조 18년 11월 이후로 청국의 詰責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한 조선 정부는 조야의 민심과는 달리 逃還人·逃漢人·向化人의 三件 刷還事에 대하여 청국이 요구한 그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sup>68)</sup> 無辜한 자를 도망자로 지목해서 쇄송하는 폐해와 더불어 전국적인 大旱災로 민심이 크게 洶湧해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다.<sup>69)</sup> 그 이후로도 조선은 청국과의 외교상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이들의 쇄송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였다.<sup>70)</sup>

66) 『심양장계』 무인년 7월 8일조. 경진년(인조 18년) 5월 7일조의 승정원 개탁에 의하면 향화인의 송환 요구는 계속되었다.

67) 『심양장계』 경진년 12월 19일 승정원 개탁에 의하면 58명 중에서 1명이 중도에 얼어 죽어서 57명을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68) 『인조실록』 인조 18년 11월 임오(5일)와 갑신(7일)의 영의정 洪瑞鳳의 馳啓 참조. 송환인을 보면 77인(18년 11월 15일), 600여 인(18.11.29), 70여 인(19.1.4), 57인(20.10.38) 등 총 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6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5월 정축조의 玉堂의 상소문에서 大旱魃의 원인을 무고자의 강제 송환으로 인한 天怒로 인식하고 있다.

70) 『인조실록』 권46(전), 인조 23년 7월 신미조에 의하면 청국의 포로로 심양의 세자에게 주었던 명나라 환관 이방근 등 5명과 궁녀 1인을 세자가 서거하자, 귀국하는 청국 사신 편에 되돌려 보냈다.

#### 4. 捕虜 送還의 影響

조선과 청국 양국간의 전후처리의 주요 과제인 포로 송환에 대한 전반적인 실상을 알아보았다. 포로 송환의 결과는 양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특히 포로 송환의 주 대상이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조선 사회 내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포로 송환의 결과로 인한 조선 사회의 영향으로는 군사외교상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 및 문화적 변화로도 나타났다.<sup>71)</sup> 이러한 가운데 가장 심대하게 충격을 준 것은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건설을 지상주의로 내세우고 있었던 도덕 윤리관에 대한 시험이요 도전의 문제였다. 바로 송환된 포로 婦人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사회 윤리적 문제로 인한 葛藤과 對立이었다. 즉 贖還女로 호칭된 이들은 양반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로 청군에 끌려갔다가 정절을 상실하고 귀환한 무리로 여겼다. 지아비에 대한 정절을 중시하는 당대 유교의 윤리관으로서는 이들을 가문에 다시 용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당시의 관례로는 정절을 상실한 부녀자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文科에 응시하거나 관직의 요직에 등용될 수도 없었다.<sup>72)</sup> 따라서 각 가문에서는 失節한 어머니와 아내의 용납을 기피 내지는 거부했던 것으로 큰 사회적 문제였다.

속환녀들이 귀환하자 사대부들은 실절한 아내와의 離異 즉 離婚을 청원

71) 조선인 포로들의 신분은 군사가 아닌 민간인 자격이었고, 이들 포로 송환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속환의 방법이였다. 그러므로 포로 송환 문제는 군사외교의 성격이 약하였고, 청이 명정벌군으로 요청한 조선군 파병 문제도 직접적으로는 丁丑和盟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적 측면의 변화에 있어서 소현세자의 귀국시에 서양 신문명의 전래를 통해서 신문화 수입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외래 문물에 대한 배타성을 증대시킨 부작용도 파생시켰다. 그리고 송환된 포로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현상보다는 왕실 일부에 국한된 영향이었다. 조선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신문물의 수입은 이후로 전개된 조선과 청국간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사대외교의 산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72) 『經國大典』, 「吏典」京官職.



하는 상소가 빈번해졌다. 속환녀의 처리 문제로 인해서 조선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실절한 부녀자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념 대결은 정부 대신들 간에 이혼을 주장하는 離異論者와 재결합을 주장하는 復合論者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점차로 이혼론은 사회 전반적인 추세였고 여기에 다수의 대신들도 이를 지지했던 반면에 국왕과 일부 대신들만이 이혼론을 반대했던 것이다.<sup>73)</sup>

속환녀에 대한 이혼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638년(인조 16) 3월에 新豊府院君 張維가 강화도에서 피랍되었다가 속환되어 돌아온 그의 독자 張善激의 처에 대한 이혼사를 예조에 올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혼 사유는 被擄된 子婦는 失節했을 것이므로 사대부가에서 제사를 봉하고 또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前承旨 韓履謙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어서 좌의정 崔鳴吉도 제기하기를

사족 부녀로 피로 되었다가 속환된 자가 한 둘이 아니며, 또 피로 되었다고 모두 失節한 것도 아니다. 만일 이혼을 명하면 속가가 마련되지 않겠거나 부족해서 다시 마련하여 장차 속환해 오려고 하는 지아비들이 자기 처를 속환해 오지 않을 것이니 허다한 부녀가 영원히 異域의 魂鬼가 될 것이다. 한 지아비의 원통함을 푸는 것이 오히려 百家의 원통함을 품는 것이 되게 하니 이로써 불가하다.<sup>74)</sup>

라 하여 이혼론에 반대하였다. 조정에서는 피로 부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결합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특히도 최명길은 이혼론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당시의 처참한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내세운 陽明學的 가치관과도 관련된다 하겠다.<sup>75)</sup> 이리하여 당시 국론은 조정 일부에

73) 森岡康, 『贖還被擄婦人の離異問題について』, 『朝鮮學報』 26집, 1963. pp. 57-66.

74)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갑술조.

75)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 同和出版社, 1983, pp. 89-98. 세상이 숭상하는 것은 명이

서 제기된 사대부 가풍을 더럽힐 수 없다는 이혼론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공인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 현실에서는 조정의 결정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사대부 집 자체들은 모두 다시 장가들고 다시 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史臣의 평에서도 최명길의 안에 대해 통분히 비판하면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sup>76)</sup>라는 유교적 이념 하에서 추구되어 왔던 忠臣論과 동등한 차원으로서는 烈女論 및 貞操論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는 당대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명분론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이혼론이 제기된 1개월 후인 동왕 16년 4월에 여러 관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혼론을 재론하였던 것이다. 먼저 大司諫 全滉, 司諫 徐祥履, 獻納 成以性, 正言 李時萬, 正言 申濡 등이 不事二君의 忠臣論과 不更二夫의 烈女論의 명분에 따른 예의지도와 治化의 正風을 위해 이혼론을 지지하였다. 이어서 副提學 李敬輿, 校理 沈東龜, 獻納 成以性, 修撰 崔有海 등이 상소하기를 각각의 사안에 따른 이혼 처리를 주장했던 것이다.<sup>77)</sup> 이와 같은 온건적이고 중도적인 주장과는 달리 이혼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일부 대신들도 있었다. 特進官 曹文秀는 아뢰기를

부부는 인간의 대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들은 남편의 집안과 대의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어찌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하여 사대부의 가풍을

나, 그가 믿는 것은 良知의 마음으로 즉 마음 공부인 心學을 강조하였다. 그가 척화파의 金尙憲에게 보낸 詩에서 ‘斥和는 守經(原則)이요, 主和는 權(方便)이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이를 유추할 수 있겠다. 즉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절의를 내세운 원칙이지만, 이혼 반대는 현실적인 방편으로서의 權道라는 점이다.

76)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3월 갑술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決不可勒復合以汚士大夫家風也”.

77)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계해조.

더럽힐 수 있었습니까. 우리 동방은 예의의 나라인데 한번 변란을 겪은 뒤 이런 조치가 있으니 신은 삼가 성조를 위하여 부끄럽게 여깁니다.<sup>78)</sup>

라고 하면서 동방 예의지국의 가풍으로 대륜을 끊은 여자를 억지로 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혼론을 주장하면서 최명길의 이혼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런데도 국왕은 계속해서 최명길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사헌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대신들이 조문수의 안에 찬동하면서 국왕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다. 결국 조정은 이혼론 문제로 인해 국론이 양분되고 말았다. 국왕은 廟堂의 처치가 실로 權道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관 부서인 예조에서 각자의 소원대로 들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領敦寧府事 李聖求와 우의정 申景禎도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이 절충안은 외형적으로는 묘당과 대간의 양측 주장을 일정하게 포용하는 중도론이지만 특례적인 경우에 따라 이혼과 재취를 허락한다는 점에서 수정된 이혼론이라 할 수 있겠다.<sup>79)</sup> 이와 같은 양자의 절충안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최명길은 명분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도적 처리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최명길이 이르기를

선조께서 환도한 후 사대부의 처로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자들은 모두 改娶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柳成龍·李元翼·李德馨·李恒福·成渾 등과 같은 名卿碩儒들의 식견의 바름은 반드시 지금 사람들과 비할 바가 아닐텐데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혼과 재가 두 가지를 모두 허락한다면 국법이 둘로 갈라져 일관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분과 인도, 둘 중의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찌 이를 왕도정치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

78)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계미조.

79)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갑진조.

도적인 길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sup>80)</sup>

라고 하여 이혼론을 반대하였다. 최명길의 인도적 주장에 대한 일차적 근거는 임진왜란 후의 宣祖의 결단을 先例로 수용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이혼과 재가를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재천명한 것이었다.

조정에서 이혼론 문제가 재론된 것은 2년 후인 인조 18년 9월로 전일에 예조에 상정되었던 이혼사건에 대한 재심이었다. 張維의 사망을 계기로 그의 처 金氏가 그의 아들 張善激의 처에 대한 이혼사를 예조에 다시 청원한 것이었다. 이에 영의정 洪瑞鳳이 아뢰기를

지금 그들을 처리하는 방도는 이미 오욕 당한 모든 부녀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으로 책망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동거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하고, 다시 장가드는 일도 금하지 말아서, 남편 없는 여자와 아내 없는 남자로 하여금 각기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sup>81)</sup>

라고 하여 재취에 대한 허용을 주장하였다. 이어 우의정 姜碩期도 七去之惡의 명분을 내세워 이혼론의 허가를 주장하였다.<sup>82)</sup> 결국 국왕도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이혼 금지를 재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례적인 조치에 따른 이혼을 윤택하고 말했다.<sup>83)</sup> 그러므로 현실에서 七去之惡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이혼이 허락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혼 금지 법령은 그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公布한 셈이다.

인조 16년 3월에 제기된 속환녀에 대한 이혼 금지론은 정부의 공식적인 강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동방 예의지국으로서의 절의

8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갑진조. 『대동야승』 권34, 「속잡록」 4, 무인년 6월 5일 조에도 宣祖는 임진란 속환녀의 남편들이 제기한 이혼 및 재취를 불허하였다.

81) 『인조실록』 권41, 인조 18년 9월 경자조.

82) 『인조실록』 권41, 인조 18년 9월 경자조.

83) 『인조실록』 권41, 인조 18년 9월 경자조.

를 내세운 대신들의 격렬한 반론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이혼 금지는 하나의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법령에 불과하였다. 당시 현실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대부 가문의 속환녀는 그 가문으로부터 축출 당하는 비운으로 자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칠거지악에 연루된 이혼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병자호란이 종결된 30년 즉 1세대가 경과할 때까지 朝野에서의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sup>84)</sup>

## 5. 結 論

청국은 중원 경략에 앞서 조선과의 전쟁이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포로들을 획득하였다. 청국이 전쟁 중에 포로 획득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전후 처리에 있어 주요한 현안 문제였던 포로 송환문제를 통해서 청국은 중원 경략시에 요구되는 후방 안전 보장과 또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청군은 인신 매매범과도 같이 수많은 조선인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들 포로에 대한 속환가를 통한 송환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측은 속환가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송환 업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실적인 포로 송환 욕구로 개인들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교섭으로 그 속가는 날로 폭등했던 것이다. 포로 송환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과 청국간의 대외 문제는 포로 송환에 대한 속환가와 도망 포로의 압송 문제였다. 또한 포로 송환으로 인한 대내 문제로는 속환녀의 처리 문제였다. 당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는 이혼 금지를

84) 『顯宗實錄』 권14, 현종 8년 9월 신유조. 執義 崔寬의 파직 상소에 대한 史臣의 논평 참조. 최관의 계모인 權氏가 속환녀였는데 죽은 뒤에 신주를 家廟에 들일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행하여졌다. 사신은 최관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집안 출신으로 臺閣 내의 관리로 임명된 사실을 猥濫된 것으로 평하였다.

내세워서 사대부의 실절 부녀자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의론의 주장으로 칠거지악의 명분에 따른 이혼의 허락과 재가를 인정하는 궁여지책이 일반적인 조치였다.

조선의 대청전쟁을 통한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전개된 포로 송환상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조선과 청국간의 포로 송환에 관한 군사외교 문제가 초기 공식적인 정부 주도형에서 후기에는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정축약조로 양국간의 호혜적 평등적 관계가 아닌 청국의 일방적인 외교관계였다. 전승국 청국은 패전국 조선에게 일방적이고도 필요에 의한 助兵 요구나 恣意的인 태도로 포로 송환에 임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조선 정부로서는 포로 송환 문제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민간 및 개인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상에서 정부나 민간은 서로의 불신과 낭비적 요소가 증대되었고 그 성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로 청국의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속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성에 목표를 둔 조치였다. 청군이 조선인 포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목적이 대중국전 수행을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력 확충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청군이 조선 영내에 침입과 더불어 인신 매매법과 다름없는 무차별 노략의 자행은 전후처리상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경제적 이득과 관련이 된 것이다. 정묘호란을 통해서 조선인 포로의 속환에 따른 경제성을 실감했던 청군은 병자호란시에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 특히도 부녀자 피랍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임란시에 일본군이 포로 피랍의 목표를 陶工·印刷工 등과 같은 기술자에 우선을 둔 것과는 달랐다. 이는 임진왜란기 일본이 조선인 포로를 서양 노예상에게 전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포로 송환에 있어서는 속환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안 했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점이다. 청국은 속환가의 미지불로 인한 미송환 포로에 대해서 중국에는 청국민으로 편입시켜 자국의 노동력에 충당했던 것이다.

셋째로 청국은 허가된 포로 송환의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조선인 도망포로와 향화인의 송환을 강압적으로 조선에 요구하였다. 이는 조선인 포로의 도망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응징적인 조치이자, 청국 내의 중국 한인은 물론하고 자국민인 여진인까지 포함된 점은 청국민 전체에 대한 도망 방지책이었다. 또한 이와 같이 청국이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엄격한 간섭과 통제를 통해서 조선의 反淸運動을 사전에 제어하려는 하나의 안전 보장책이기도 하였다.

넷째로 포로 송환 처리인 속환 업무 기간을 10년이라는 단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조선의 대일본 포로 송환의 문제를 종전 40년간 지속한 사실과 비교할 때에 이는 분명히 단기간이었다. 청국이 이처럼 포로 송환 문제를 단기간 종결의 원칙을 제시한 점은 중원 공략을 위한 신속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송환된 포로 중에서 부녀자 처리문제는 조선 사회내의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의한 극단적인 시비론을 가열케 만들었다. 속환가의 폭등으로 정부는 속환에 소극적이었고 이를 대신하여 개입한 사대부 가문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되었고, 또한 절의를 중시한 도덕관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된 것이다. 정부는 미봉적인 대책으로 이혼 및 재취금지의 인정론을 내세웠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이념 논쟁으로 조정내의 국론 분열을 심화시켰다.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조선의 주요 과제는 조선인 포로 송환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천은 미약한 실정으로 송환된 조선인 포로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는 미송환된 상태로 종결되고 말았다. 이들 미송환된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청국의 청국민화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관해서도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